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9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3.

발 의 자 : 박성중 · 홍석준 · 하영제
양향자 · 김영식 · 정우택
이종성 · 金炳旭 · 장제원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고령층·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비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비교·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통신사가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안 제 32조의1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안 제 32조의10 신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안 제32조의11 신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망, 폐업 등 이용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확인과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및 제32조의4제5항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2조의5제4항 신설),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0조의2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하여(안 제104조제6항 개정)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범주가 디지털 콘텐츠·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의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제3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요금으로”를 “요금과 단말장치로”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 격차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따른 본인임을”을 “따른 사망 등 확인 방법, 제4항에 따른 본인임을”로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자의 사망,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관은 부정가입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0(이용자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자의 실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중 적절한 추천 요금제에 관한 정보(이하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 고지의 시기,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11(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가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12(통신서비스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용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하려는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

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의8”을 “제32조의8, 제32조의10부터 제32조의12까지”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의1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제104조제5항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제6호,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4의7. 제32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보편적 의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u>요금으로</u>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의무를 말한다. 11. ~ 15. (생 략)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요금과 단말장치로</u> ----- ----- ---. 11. ~ 15. (현행과 같음)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 ② (생 략) ③ 보편적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④ ~ ⑧ (생 략)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정보 격차</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전기통신의무의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u>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자의 사망,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따른 사망 등 확인 방법, 제4항에 따른 본인임을-----
-----.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위탁기관은 부정가입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10(이용자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신 설>

<신 설>

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자의 실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중 적절한 추천 요금제에 관한 정보(이하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 고지의 시기,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11(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단말장치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자가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의12(통신서비스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용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u>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2. ----- ----- ----- ----- ----- ----- 제5 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하려는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5항에 따른 -----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

-----.

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

1. -----

----- 제32조
의8, 제32조의10부터 제32조
의12까지-----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32조의1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단말장치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4. ~ 7. (생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 ----- ----- ----- ---
1. ~ 4의6. (생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신설>	4의7. 제32조의10제1항을 위반

5. ~ 17. (생 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u>하여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u> 5. ~ 17.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6호, 제2항----- ----- ----- ----- ----- 각 호(제6호를 제외한 다)----- ----- ----- ----- ----- ----- ----- -----.
--	---